

**7****인사위원회 운영****가. 설치(「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」 제27조)**

시·도교육청과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.

**나. 조직(동규정 제28조)**

- 1)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시·도교육청의 위원장은 부교육감, 교육지원청의 위원장은 직제상 교육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이 된다.
- 2)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소속공무원과 지역인사 중에서 시·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소속 교원 또는 인사행정전문가, 법률전문가,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 등 외부 인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 단, 외부인사에는 당해 지역을 생활근 거지로 하는 학부모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3) 위촉된 인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
- 4)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,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

**다. 회의소집(동규정 제29조)**

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**라. 의사 및 의결정족수(동규정 제30조)**

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마. 심의사항(동규정 제31조)**

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)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
- 2) 교육공무원의 승진·전직 및 전보 등 인사에 관한 기본 계획
- 3) 임용령 제9조의5(교장 등의 임용)의 규정에 의한 교장·원장 중임 및 원로교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
- 4)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5) 임용령 제13조의2(전직등의 제한)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한 전직 또는 전보